



---

## 집합투자재산 사전자산배분 기준

---

(2018. 6. 20)

	준법감시인	대표이사
확 인 필		

아이맵자산운용 주식회사

# 집합투자재산 사전자산배분 기준

## 제 1 장 총칙

**제 1 조(목적)** 이 기준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내역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**제 2 조(적용범위)** 이 기준은 회사내 운용담당자 등 집합투자재산운용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며, 대상자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 80 조제 1 항의 단서 및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에 따른 증권(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를 포함 한다)에 한한다. 단, 투자신탁재산별로 각각의 계좌를 두고 계좌별로 매매 및 청약 주문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**제 3 조(용어의 정의)**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① "사전자산배분"은 법 제 80 조에서 규정한 투자재산신탁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내역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.
- ② "운용담당자"는 실제 및 가상의 투자신탁을 직접 운용하는 직원을 말한다.
- ③ "매매담당자"는 운용담당자로부터 매매주문을 접수하여 직접 자산의 취득, 매각 등을 실행하는 직원을 말한다.

**제 4 조(개정 등)** 이 기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 다만, 법령 및 내규의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, 자구수정 등과 같이 실질적인 내용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이를 승인할 수 있다.

## 제 2 장 사전자산배분

**제 5 조(일반원칙)** 회사의 자산배분절차는 다음 각호의 내용들을 원칙으로 한다 .

- ① 회사는 매매와 자산배분에 있어서 관련 법규와 회사 규정을 준수한다.
- ② 모든 고객을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하며,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은 특정수익자 또는 특정 투자신탁재산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이루어져서는 안된다.
- ③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의 분리 및 사전자산배분내역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.

**제 6 조(사전자산배분원칙)** ① 운용담당자가 다수의 투자신탁재산별 동일한 매매조건으로 동시에 주문하는 경우 취득, 매각한 자산은 각 펀드에 균등한 가격으로 배분하여야 한다.

② 주문시간이 다른 동일한 종목에 대한 각각의 주문은 별개의 주문으로 본다.

③ 공모주, 회사채 등의 수요예측을 통한 자산취득의 경우 운용담당자는 청약일에 투자신탁별로 청약수량을 기재한 사전자산배분명세서를 작성하고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
④ 공모주 및 회사채 등의 청약은 그 실행결과가 법 제 81 조 제 1 항 제 1 호 각목 및 각 투자신탁규약에서 정한 해당 자산의 최대편입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실행해야 한다.

⑤ 회사가 배정받은 공모주 및 회사채는 투자신탁별로 청약수량에 안분 비례하여 배정한다.

⑥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 사사오입하여 배정하되 잔여수량은 청약수량이 가장 많은 투자신탁에 배정할 수 있다.

⑦ 대량매매(시간외 대량매매에 한 한다)의 경우 운용담당자는 참여 대상펀드를 선정하여 CIO 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배분 하여야 하며, 준법감시인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.

⑧ 최종 매매체결 수량이 매매주문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투자신탁재산별 주문비율(주식수 비율, 채권액면 비율)에 따라 안분 배분한다. 또한, 투자신탁재산별 수량 배분후 잔여수량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 주문펀드에 잔여수량을 배분할 수 있고, 수량의 배분만 이루어져 보유의 의미가 없을 경우에는 배분을 증가시키거나 전혀 배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. 다만, 채권자산의 경우 체결규모가 주문수량에 미달할 것을 예상하여 투자신탁별 상황 및 운용필요에 따라 우선배분 등 안분외 방법을 사전에 배분조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명시한 내용대로 배분할 수 있다.

⑨ 각 투자신탁별로 주식 및 채권, 기타 전략별 투자자산 등을 투자하고 남은 운용가능한 유동성자금을 RP(환매매수조건부매매) 및 콜론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에 대한 자금운용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합산하여 통합운용 및 거래를 할 수 있다.

또한 설정 1 개월 내 투자신탁 또는 단기금융상품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투자신탁 등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또는 추가배분을 할 수 있다.

**제 7 조(사전자산배분에 관한 기준의 공시)** 회사는 사전자산배분에 관한 기준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.

### 제 3 장 자산배분내역에 관한 장부 및 서류

**제 8 조(자산배분내역에 관한 장부 및 서류)** ① 자산의 취득, 매각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매매하고자하는 자산에 대하여 투자신탁재산별로 주문금액, 수량, 가격 등을 기재한 매매주문서와 투자신탁재산별 배분내역을 기재한 자산배분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매매주문서 및 자산배분내역서는 매매주문서 등으로 기록 유지되어야 하며 CIO 및 준법감시인이 이행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.

## 제 4 장 매매주문서의 작성 및 매매주문의 실행

**제 9 조(매매주문서의 작성)** ① 운용담당자는 자산의 취득, 매각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매매하고자 하는 자산에 대하여 투자신탁재산별로 종목, 주문금액, 수량, 가격, 주문시간 등을 기재한 매매주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매매주문서상의 가격주문은 해당자산의 단가 혹은 수익률 등으로 표시되며, 지정가격, 시장가격뿐만 아니라 특정 주문방법 혹은 범위를 정하여 매매담당자에게 주문을 접수할 수 있다.

**제 10 조(매매주문서의 실행)** 매매담당자는 사전에 작성된 매매주문서를 기초로 하여 자산의 취득, 매각 등을 실행(투자중개업자에게 전송)하여야 한다.

## 제 5 장 자산배분내역서 작성

**제 11 조(자산배분내역서의 작성)** ① 매매담당자는 매매주문서와 체결내역서를 기초로 하여 자산배분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자산배분내역서는 체결된 종목에 대하여 체결가격, 배분가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.

③ 펀드별로 매매주문서와 상이한 수량으로 배분될 시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.

## 제 6 장 운용업무와 매매업무의 분리

**제 12 조(운용업무와 매매업무의 분리)** 법 제 80 조제 3 항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의 취득, 처분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직원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, 처분 등의 실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구분하여야 한다. 다만 법 시행규칙 제 10 조제 4 항에서 정하는 겸직금지 예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.

**제 13 조(당일 발행자산의 특례)** 당일 발행자산(당일 거래시간 중에 사전예고 없이 발행여부 및 발행조건이 결정되는 채무증권, 양도성예금증서 등)의 특성을 감안하여 운용담당자는 제 12 조에도 불구하고 투자중개업자 등과 직접 정보통신수단을 통하여 예외적으로 주문을 체결 할 수 있다. 이때 운용담당자는 주문체결이 확정되는 경우 정보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투자신탁별 코드 및 배분수량 등 최소한의 내용을 기재한 주문내역을 매매담당자 에게 즉시 통보한다.

## 제 7 장 사전자산배분의 정정

**제 14 조** 자산배분내역서에 따른 체결자산의 배분은 원칙적으로 정정이 불가하다. 다만,

시스템 오류, 운용담당자의 주문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통하여 정정을 할 수 있다. 이때에는 그 불가피한 사유 및 사건의 원인, 관련 된 이해상충이 없음을 설명하는 자료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.

#### 부 칙

제 1 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18 년 6 월 20 일부터 시행한다.